

지리적 표시제도의 의의 및 보호체제 연구*

고 용 부**

A Study on the Concept and Protection System for the Geographical Indication

Yong-Bu Go

목 차

- | | |
|------------------------|-------------------------|
| I. 서론 | IV. 한·중 FTA와 지리적 표시보호체제 |
| II. 지리적 표시제의 의의 및 전개과정 | V. 결론 |
| III. WTO협정과 지리적 표시보호체제 | |

Key Words: Geographical Indic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Korea-EU FTA, TRIPS, EC Regulation.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concept and protection system for the geographical Indication(GI) to support the Korea-EU FTA. A geographical indication(GI) is a name or sign used on certain products or which corresponds to a specific geographical indication or origin (eg. a town, region, or country). The use of a GI may act as a certification that the product possesses certain qualities, or enjoys a certain reputation, due to its geographical origin. In the 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There are, in effect, two basic obligations from Article 22 to article 23 on WTO member governments relating to GIs in the TRIPS agreement. Geographical Indications have long been associated with Europe as an entity, where there is a tradition of associating certain food products with particular regions, Under European Union Law, the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system which came into effect in 1992 and 2003 regulates the following geographical indications: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PDO) and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PGI) and Traditional Specialty Guaranteed(TSG). They have 5,000 articles for GI. We have the GI system and 40 articles relating to registration by the law for quality management of production in agriculture. Cinclusinally, geographical indications could potentially serve as tools to help holders of trade benefit more equitable through the mutual Acceptance for Korea-EU FTA.

▷ 논문접수: 2007.08.27 ▷ 심사완료: 2007.09.10 ▷ 게재확정: 2007.09.19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원광대학교 경상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yongbu@wonkwang.ac.kr, 011-208-4641

I. 서론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은 새로운 물질의 발견, 새로운 제법, 새로운 용도, 새로운 상품의 디자인, 상품의 새로운 기능의 개발 등과 같은 산업적 발명과 문학·미술·음악·연극·방송 등에서의 예술적·산업적 시장가치를 지니는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이라고 정의 되며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산업·과학적 발명과 문학적 창작 등 인간의 창의적 정신활동의 결과인 지적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총칭한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산업체산권, 저작권 및 신지적 재산권의 분야로 구별할 수 있고, 산업체산권은 최근까지 사용되어 왔던 공업소유권을 개칭한 것으로 특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지리적 표시 등에 관한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문제는 권리자의 기대이익 보장과 비권리자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규제강화라는 궁정적 성격뿐만 아니라, 지적 생산물에 대한 독점의 허용에 의한 비효율적인 자원분배와 시장경쟁의 약화 가능성 등 부정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¹⁾

그런데 이 같은 지적재산권 중 특히 지리적표시의 보호 문제는 과거에는 국내정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 국제기구와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특히협력조약, 세계저작권협약, 제네바협약 등 국제협약에 일임되어 왔고, GATT 1947에도 관련 조항이²⁾ 있었지만 이들 조항은 지적재산권의 부적절하고 미비한 보호로부터 발생하는 무역장벽에 대해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GATT체제하에서 일부 회원국들은 그와 같은 보호수준의 미흡, 효과적인 강제력의 결핍, 기존협약의 속지주의 채택, 미 일방조치에 따른 불이익, 신기술분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등 기존의 지적재산권 보호현실을 지적하면서 지적재산권 이슈를 우루파이 라운드 협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문제가 다자간 협상의 의제로 포함되었고, 여기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인 TRIPs(Trade-Related in tellectual Properties) 협정이 탄생된 것이다.

여기서 EC와 스위스는 원산지 명칭 특히 주(Wine)와 주류(spirits)의 지리적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보호규정을 TRIPs 협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일반적인 명칭이 아닌 구체적인 명칭을, 그것도 단지 그 명칭의 사용이 공중에게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더 낮은 수준으로 보호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TRIPs 협정은 원산지 명칭의 보호³⁾와 포도주, 주류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를 포함하고 있다.⁴⁾ 또한 “회원국들은 개

1) Ross, Jule Chasen, TRIPs in: Terence P. Stewart(ed.), *The GATT Uruguay Round: A Negotiation History(1986~1992)Volume II: Commentary*,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 1993, 2245~2263면.

2) GATT 1947 1조, 3조, 8조, 9조, 12조, 18조, 20조 등이 그것이다.

3) TRIPs 협정 제24조 2항

4) TRIPs 협정 제24조 1항

별적인 지리적 표시의 보호강화를 위한 협의개시에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TRIPs 협정의 실시 전 최소 10년 간 또는 선의의 계속적 사용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⁵⁾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작을 계기로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EU FTA 추진 2차 협상에서는 공연 보상청구권과 함께 지리적표시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농업이 곡물과 쇠고기, 닭고기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의 우위를 갖는다면 EU는 돼지고기, 낙농품, 과일 등에 비교우위를 정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가 농산품과 가공품에 대해 지리적 표시제라는 지적 소유권으로서의 상품 명칭 보호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농산물 등과 지명과 연계된 제품명에 배타적권리를 인정하는 지리적 표시제를 상호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EU는 와인과 중류주(Spirits)는 물론 농산물(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3차 협상(7월 15일~20일)부터 지리적 표시제는 모조품 규제와 함께 지적재산권 분야의 주요의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하 지리적 표시체제의 개념과 국제적 논의 TRIPs 상의 지리적 표시 한·중 FTA와 지리적 표시문제 등을 다룬다.

II. 지리적 표시제의 의의 및 전개과정

1. 지리적 표시제의 의의 및 연혁

전통적으로 지리적 표시에 관한 용어는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의 개념인데,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특정의 국가,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알리는 표지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는 원산지표시(appellation of origin)의 개념인데, 이는 생산된 제품의 특징적인 품질이 생산지의 지리적 환경에 의하여 밀접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생산지의 지리적 명칭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지리적 표시는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⁶⁾의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역, 특정 장소의 명칭을 의미하며 우리나라⁷⁾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지역특산물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즉, 다른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정 품질이나 명성이나 그 밖의 특성이 존재하고 그러한 특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5) TRIPs 협정 제24조 4항

6) 예외적인 경우 국가도 포함한다.

7)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2)에서는 특성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보르도 포도주나 코냑 브랜드뿐만 아니라 지역 명칭에서 유래된 샴페인으로 더 알려진 진상파뉴 발포성 와인 '스카치 위스키', '아르덴 치즈' 등이 대표적인 지리적표시제 상품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브르고뉴 포도주, 보르도 포도주, 샹빠뉴(샴페인), 쿠바의 하바나 시가처럼 지리적표시의 대상이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해당 지역, 특정 장소 또는 국가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지리적 기원이 있어야 하며, 둘째, 지리적 원산지에서 기인하는 특수한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지리적인 특성을 갖추어야 하고, 셋째, 해당 상품의 '생산, 가공 준비과정이 동시에 또는 각각'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역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지리적 표시제의 인정이유는 특정 농식품은 그들이 생산되는 특정 지역이 보유한 자연환경의 '유전인자'를 물려받음으로서 다른 지역 생산품과는 품질과 특성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 차이를 인증 받으면 배타적 재산권이 있다는 것이다.

무역자유화, 세계화 추세의 진전과 함께 지리적 표시제에는 국가마다 자국의 역사적 음식문화 보호, 또는 그를 통한 민족적 혹은 국가적 정체성 보호수단이라는 관념까지 작용되어 현재 WTO의 다자간 무역협상,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다.

현재 지리적 표시제도가 가장 발달된 지역은 유럽이며 우리나라에는 EU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지리적 표시는 고대 이집트에서 벽돌 제작자들이 피라미드 건축에 사용되었던 벽돌과 돌의 내구성을 원산지와 관련해 사용했었다. 지리적 표시는 또한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미 품질에 대한 표지로 사용되었다. 당시 다소스 산포도주는 20리터 당 20 드라크마의 가격 프리미움을 형성하고 있었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Parmigiano 치즈나 Comcejasmin 치즈같은 지리적 표시는 그 기원을 찾아보면 1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외에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도 똑같은 의미로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Washington 감자는 그 기원이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Basmati 쌀, Long-Ging 차, jasmin 쌀 등은 또한 인도, 중국, 대만의 국가적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것들로서 지리적 표시의 좋은 사례가 된다.⁸⁾

2. 유사개념과의 차이

지리적 표시는 상표, 단체표장, 품질인증, 원산지 표시 증명표장 등과 유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들과 혼동하기 쉬우며, 많은 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상표나 단체표장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체계에서는 상표과 지리적 표시의 개념 간에 법적 차이가 크지 않게 되나, TRIPs 협정상의 지리적 표시의 정의나 보호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상표, 단체표장, 품질인증, 원산지표시와는 같은 차이가 있다.

8) <http://greenkiss.org>

첫째, 상표는 타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식별표시로서 출처표시 및 품질표시기능 영업상의 이익과 관련되며 지적재산권 범주 내에서 보호된다는 점에서는 지리적 표시와 공통 하나 전자가 특정기업과 관련되며 그 기업의 상품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재산권이나 후자는 특정지역과 관련되어 특정지역 또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에 대한 일종의 단체 사용권으로 전자와는 달리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함을 요건으로 한다.

둘째, 원산지는 당해 상품이 생산·제조 가공된 국가를 의미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산 및 가공지역을 표시도록 하는 것은 공통이나 지리적 표시는 품질, 명성, 지리적요인과의 관련성을 중시하지만 원산지 표시는 중시하지 않은 점과 국명 또는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지리적 환경요인에 의해 지역을 구획한 점에 차이가 있다.

셋째, 특정 품목의 산지의 유명도, 품질의 우수성, 생산조건 등 일정한 품질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품질 인증과는 품질의 우수성 산지의 유명도 등을 등록요건으로 하는 품질 관리정책이란 점에서는 공통하나 품질인증은 지리적 특성에 주관하고 간접적이며 신청 지역 제한이 없으나 지리적 표시는 항구적으로 유효하고 신청에 제한이 없다.

넷째, 단체표장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특허청에 출원신청하며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이에 반해 지리적 표시제도는 특정지역의 우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지역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WTO(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

다섯째, 증명표장은 미국의 경우 특정지역의 산물이나 품질 또는 제조방법을 증명하거나, 특정단체의 구성원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증명하는 표지로서 지리적 명칭이 보호되나 EU의 지리적 표시 개념과는 달리 제품 원산지의 지리적 환경과 제품특성간의 엄격한 연관성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3.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 논의와 각국의 보호형태

1) 국제적 논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려는 국제적 노력은 19C 후반부터 시작되었고 그 최초의 관련 국제조약인 1883년의 파리 협약을 시작으로 1891년의 마드리드 협약, 1958년의 리스본협약 등을 거치면서 지리적표시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확산되어 왔다. 결국 지리적표시는 1995년 WTO 출범을 계기로 지적재산권보호협정에서 본격 논의되고 규정됨으로써 이른바 다자간 규범으로 편입되게 되었다. 이후 DDA협상을 통해 지리적표시제의 국제적 확산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견해가 나뉘어 타결되지 않고 있다. 지리적 표시에 대한 종래의 개별 조약들의 규정을 순차로 살펴보면 1883년 산업재산권에 관한 파리협약⁹⁾은 지리적표

9) 파리 협약 제1조 제2항 및 제10조

시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지리적표시제도의 중요성을 최초로 인정한 국제적 협약으로 보호대상 산업재산권으로서 '출처표시 혹은 원산지명칭'을 포함함으로써 지리적표시제의 국제적 보호 움직임의 효시가 되었다.

1891년의 허위·기만적 출처표시 금지에 관한 마드리드협정¹⁰⁾은 파리협정보다 지리적표시제의 보호내용과 범위 면에서 한층 진전된 협정으로 여기서는 허위 또는 오인을 유발하는 지리적 명칭 혹은 출처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¹¹⁾. 그리고 1958년의 원산지명칭보호와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협정에서는 보호대상 원산지 명칭에 대한 정의를 ① 지리적 표시는 국가, 지역, 지방의 지리적 이름을 의미하며 그것이 그곳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생산물을 지명하는데 사용되고 그 특정 생산품의 품질과 특성이 배타적으로 혹은 근본적으로 자연적 인정요소를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 기인되어야 하고 ② 단순한 출처표시로서의 지리적 표시가 아닌 생산품의 품질과 특성이 해당 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연계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¹²⁾.

또한 이러한 보호대상 원산지 명칭은 어떠한 변형된 형태든 즉, ~kind(류), ~type(형), ~make(제조), ~imitation(모방) 등과 같은 단어를 이용한 결합성 모방사용을 금지하였다.

그 후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지리적표시제가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TRIPs: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에 정식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리적 표시는 국내적(national), 혹은 양자적(bilateral), 혹은 복수적(plurilateral) 이슈에서 국제적 다자적(multilateral) 이슈로 등장하면서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고 WTO 회원국은 국내법에 수행하는 의무를 부담케 된 것이다.

지리적 표시는 TRIPs 협정에 편입된 후에도 계속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전개돼 왔다. 특히 EU는 지리적 표시제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DDA협상을 통해 지리적 표시 등록 상품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다자간 GI 등록시스템 도입하고 지리적 표시 보호대상상품을 확대하고자 제안하여 이를 논의한 바 있다¹³⁾. 이에 대해 전자의 경우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다자등록시스템의 법적구속력 및 참가국의 범위로서 미국, 호주 등 신농업국가는 데이터베이스 수준의 자율적인 등록 체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EU, 인도 등 구농업국가는 법적 효력이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는 등록 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후자의 경우 EU 등 구농업국은 포도주 및 종류주에 대한 보호 수준을 다른 상품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나 미국, 호주 등 신농업국들은 WTO/TRIPs 협정 제22조의 일반적 보호만으로도 충분히 지리적 표시 보호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10) 마드리드협정은 파리협약을 모태로 하는 협정이고 1891년에 체결되어 1892년 발효되었고 4차례 개정후 1967년 스ток홀름에서 복수규정이 추가되었다.

11) 리스본협정 제2조 제1항

12) 리스본협정 제2조 제1항

13) 2003년 칸쿤 회의에서 EU는 35개 식품 및 주류를 보호대상품목으로 제출했는데 와인 및 종류수 와 마찬가지로 치즈, 차, 쌀 등 농산물과 식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2) 각국의 보호형태

지리적 표시는 WTO/TRIPs 협정 체결을 통하여 비로소 법국가적으로 보호되기 시작된 신지식재산권으로서 각 국가별 산업구조나 지리적 표시 보호대상 상품의 유무 등에 따라서 그 보호대상, 보호방법, 보호절차, 보호요과 등의 보호형태에 있어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를 크게 구분해 보면 ①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제도를 통한 상표법 중심의 보호 ② 원산지명칭 또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 중심의 보호 ③ 부정 경쟁방지법 등을 통한 거래관행 중심의 보호로 나눌 수 있다. 다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위의 어느 한가지 방법으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유형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를 복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상표법을 통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특별법을 통한 지리적 표시 등록 제도를 병행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형태를 보면 상표법의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제도를 보호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중국, 에스토니아 등이고, 별도의 지리적 표시 등록법으로 보호하는 국가는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이며, 상표법 및 별도의 지리적 표시 등록법으로 보호하는 국가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영국, 아일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10개국이고,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보호하는 국가는 일본이 있다.

지리적표시 관련제도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달되어 왔고 현재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는 매우 엄격한 독립된 형태의 지리적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일반 상표제도(trademark laws) 내에서 인증표시제 (certification mark systems)를 가지고 지리적표시를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자는 ① 식별대상에 있어 전자는 원산지 후자는 품질 ② 목적상 전자는 기후 토양 기타 특성 반영이나 후자는 품질인증 또는 단체화된 반영 ③ 권리소유자는 전자는 역내 생산자를 대표하는 국가 혹은 준국가 단체, 후자는 생산이 아닌 판매 촉진 활동만 가능한 표시 소유자 ④ 보호수단은 전자는 공적 대표기관이나 후자는 공적 대표기관에 의한 인증표시보호단체에 의한 단체표시보호 ⑤ 보호기간은 전자는 조건 불변시 지속, 후자는 단체 또는 인증표시생산에 의존하는 등 차이가 있다¹⁴⁾.

이러한 미국과 EU의 제도적 상이성은 결국 WTO 내에서 분쟁으로 연결되었고 현재 국제적으로 지리적표시제를 둘러싸고 가장 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세력이 되었다. 미국은 EU제도가 EU외 다른 국가들의 제도를 차별하고 특히 EU제도와 충돌하는 자국의 기준 지리적 표시관련 제도를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1999년 WTO에 제소하게 되었고 WTO는 지난 2005년 패널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그에 따라 EU는 2006년에 자신들의

14) Tim Joling, What's in a Name? Paper Presented to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Integration Studies, Trinity College, Dublin(2005)

기존 제도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다.¹⁵⁾

2006년 3월 유럽연합은 기존의 Regulation(EEC) No2081/92를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유럽연합에 소속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도 유럽연합 시스템을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표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는 신청 양식을 회원국 정부에 제출하고, 회원국 정부가 이를 심사한 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여기서 또 회원국이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검토 및 최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출원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에 관여하고 객관성을 높이고, 결정된 사항이 25개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한다. 이러한 개정은 표시제 인증 과정과 기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WTO의 2005년 결정을 일부 반영하여, 제 3세계 국가의 생산자들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III. WTO협정과 지리적 표시 보호체제

1. 개요

WTO의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의 범주로 ①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② 상표 ③ 지리적 표시 ④ 의장 ⑤ 특허 ⑥ 직접 회로 ⑦ 영업비밀 등을 지적재산권의 예로 들고 있다. 여기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한 각국 특허 EC와 미국의 입장은 다르게 제안되었다. 즉, EC와 스위스는 TRIPs 협정에 샤블리(Chablis), 부르군디(Burgundy), 샹파뉴(Champagne) 등과 같은 '원산지명칭'의 보호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C안은 와인 이외의 생산품에 있어서도 그 지리적 표시를 모두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스위스안은 지리적 표시를 '원산지와 관련된 특성 또는 품질을 포함한, 상품의 지리적 원산에 대한 직·간접적인 언급'으로 정의하고, 원산지명칭을 '상품이 그것에서 생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국가, 지역 또는 지방을 지칭하는 적당한 지리적 표시'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같은 EC와 미국 간의 이견은 각국의 제안 내용에 반영되었다. 원산지명칭의 불허근거로서 EC가 '불공정경쟁(unfair competition)'을 제시한 반면, 미국은 '오해하기 쉬운 사용(misleading use)'을 제시하였다. EC안은 고도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불공정경쟁을 엄격하게 정의하고 '유형(type)' 또는 '양식(style)' 등의 용어가 붙는 지리적 표시조차도 금지하였다. 한편 미국안은 포도주에 대한 구체적인(non-generic) 원산지명칭만을, 그것도 그 사용이 '공중의 오해를 유발시키는(mislead the public)' 경우에만 보호하고 있었다. EC는 미국이 자국의 일반적인 분류목록, 특히 포도주 분야의 목록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를 원하였으나 미국은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다.¹⁶⁾

15) EC Regulation No.510/2006

16) Council Regulation No. 2392/89, 1989 O.J(L232 P.13)

2. 지리적 표시권의 의의 및 내용

TRIPs 협정은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관련하여 먼저 정의 조항을 두고 상품의 특정 품질(quality), 명성(reputation), 그 밖의 특성(other characteristic)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① 회원국의 영토 또는 ② 회원국의 지역이나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하고 있다.¹⁷⁾

여기서 사용되는 지리적 표시의 개념을 전술한 출처표시와 원산지 표시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위 정의 규정에서 비추어 볼 때 후자의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동협정은 지리적 표시권의 내용 관련 조항을 두고 있는데 첫째는 특정한 지리적 명칭의 사용금지 요청권이다¹⁸⁾. 이해 당사자는 ① 당해 상품의 지리적 근원에 대해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mislead the public) 방법으로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품의 명명 또는 소개수단의 사용, ② 파리협약 제 10조의 2¹⁹⁾ 불공정경쟁행위(act of unfair competition)를 구성하는 사용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는 상표의 무효, 거절권이다.²⁰⁾ 상품의 표시사용이 대중에게 진정한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국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상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무효화해야 한다.

한편 위 제2항과 제3항의 보호는 상품의 원산지인 영토, 지역, 지방이 문자 상으로는 사실이지만 그 상품이 다른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것으로 대중에게 오인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셋째, 포도주(wines)와 주류(spirits)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추가보호이다.²¹⁾ TRIPs 협정은 각 회원국이 특히 포도주나 주류에 대한 허위의 지리적 표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진정한 원산지표시를 하였더라고 ‘종류(kind)’, ‘유형(type)’, ‘양식(style)’, ‘모조품(imitation)’ 등의 표현으로 지리적 표시를 부가하는 것은 금지된다.²²⁾ 포도주나 다른 주류에 대하여 원산지가 아닌 지리적 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상표는 회원국의 법이 허용하는 한 직권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등록을 거부하거나 무효화해야 한다.

한편 포도주에 관한 동음(homonymous)의 지리적 표시의 경우 ① 그러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때 일반인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지리적 표시의 사용이 금지되며, ② 일반인이 오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자 사용이

17) TRIPs 협정 제22조 제1항

18) TRIPs 협정 제22조 제2항

19) 동 조항은 각 동맹국들로 하여금 동맹국 국민들에게 불공정경쟁으로부터 효율적인 보호를 보장하도록 요구하면서, 공업상, 상업상의 선량한(honest) 관행에 반하는 모든 경쟁행위는 불공정경쟁 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TRIPs 협정 제2조 제 3항 제 4항

21) 이 조항은 EC의 제안이 받아드려진 것이다.

22) TRIPs 협정 제 23조 제 1항

허용된다. 다만 관련 회원국들은 ① 당사자들에 대한 동일한 보호를 위해 그리고 ② 일반인들의 오인을 피하기 위해 서로 구분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²³⁾

또한 포도주에 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원국 네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의 통보와 등록을 위한 다자간 체제의 수립을 TRIPs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다.²⁴⁾

넷째, 국제협상 개시요구로서 TRIPs 협정은 개별적인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이 협상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²⁵⁾ 이에 따라 TRIPs 이사회는 WTO 설립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리적 표시규정의 적용을 검토하고 회원국과 협의해야 하며 합의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TRIPs 협정은 WTO 설립협정의 발효일을 기준으로 한 동결(standstill)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다섯째, 적용상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 국민이나 거주자가 ① 1994년 4월 15일 이전의 최소 10년 동안 또는 동 일자 전에 선의로, 회원국 영토 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계속적으로 포도주나 주류의 산지를 나타내는 타 회원국의 특정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해 왔을 경우, ② 제6부에서 정의된 회원국 내에서의 이 규정의 적용일 이전 또는 원산지국에서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기 이전에 상표가 선의로 출원 또는 등록되었거나 선의 사용에 의해 상표권이 취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지리적 표시나 상표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²⁶⁾

한편 ① 회원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일반명칭으로서 통용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관련 표시가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다른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 ② 일방 회원국이 WTO 협정의 발효일 현재 자국의 영토에 존재하는 포도의 종류에 대한 통상의 명칭과 관련 표시가 동일한 포도제품에 관한 다른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 등에 대해서도 협정적용의 예외가 인정된다.²⁷⁾

그러나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되지 아니하거나 보호가 중단되거나 또는 그 나라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지리적 표시는 동 협정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없다.

3. TRIPs 협정 적용상의 문제점

WTO TRIPs 협정하의 지리적 표시 보호 규정은 몇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기득권 우선 조항의 부당함이다. WTO TRIPs 규정은 제3국에서 A국의 지리적 표시를 상표로 과거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보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TRIPs가 발효되기 전 parma라는 이탈리아의 지역 명칭을 캐나다 국민이 상표로 등

23) TRIPs 협정 제23조 제3항

24) TRIPs 협정 제23조 제4항

25) TRIPs 협정 제 24조 제1항 내지 제3항

26) TRIPs 협정 제24조 제4항 내지 제 5항

27) TRIPs 협정 제24조 제6항 제7항 제9항

록했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이를 다시 NO.1 ham이라는 표시는 덧붙여야 한 사례가 그러하다. 또한 제3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거나 TRIPs 협정 체결 10년 전부터 신뢰하에 사용되어 왔던 지리적 표시도 TRIPs 협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고 있고 이는 수출 및 판촉 노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둘째는 보호 수준의 한계이다. TRIPs가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예컨대 도관을 두고 있는 스코틀랜드 사람의 표시를 종류수에 부착한 경우 이를 스카치 위스키로 보지 않게 하는 충분한 차단효과는 규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포도주 및 주정 외 품목의 변태운용의 문제이다.²⁸⁾

TRIPs 협정상의 개도국의 관심품목인 차, 쌀, 카페트, 치즈, 도자기 등은 과도한 차별 대우를 받는다. 예컨대, 미국산 포도주에 스페인 리오하 스타일이라는 표시는 할 수 없지만 치즈의 경우는 made in USA로 표시하는 한 스페인 망고 채고로 표시함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약 150개가 넘는 EU 역내 지명을 따 상표를 아르헨티나의 생산자들이 등록한 상태이다.

이 같은 문제는 과테말라의 안티구아 커피, 인도의 다질량 홍차와 바스마티 쌀, 스페인의 드론파자, 이태리의 레진노 치즈 등은 자국관리는 있으나 국제적 등록제도가 확립되지 않아 모방상품이 전 세계에 나돌고 있다.

IV. 한·EU FTA와 지리적 표시 보호제 제

1. EU의 지리적 표시제

지리적 표시는 EU 농업분야의 핵심 분야로서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보호체제를 가지고 있고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원산지 표시보호(PDO : Protected Designations of Origin)로서는 이는 원료에서 최종재까지 특정 지리적 역내에서 생산, 가공, 그리고, 조제(합성)되어야 한다. 상품의 품질 혹은 특성이 본질적으로 원산지의 특수한 지리적 환경(기후, 토질, 지역적 Know-how 등)을 포함하는 자연 및 인적 요소)에 기인되어야 하며 원료생산, 가공 및 최종제 완성단계까지 역내에서 발생되어야 한다. 즉, 이에 따라 원산지역은 기후·토질·지역 내 노하우 같은 고유의 천연·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상품의 특성과 지리적 원산지 간에는 객관적이고 매우 밀접한 연계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Huile d' olive de Nyons'는 프랑스 Nyons 지역에서만 생산·가공된 올리브기름에 국한되어야 한다며, 'Queijo Werra da Estrella'는 포르투갈의 특정 지역네에서 생산된 치즈에만 붙일 수 있다.

우선은 상품의 이름을 따온 지역에서 해당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 원산지 보호제와 달

28) <http://Greenkiss.org>

리, 생산 과정 중 한 단계만 지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져도 지리적 표시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산 과정에서 사용한 원자재가 다른 지역에서 온 경우에도 지리적 표시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지리적 표시 보호제의 경우에도 이름을 따온 지역과 상품 간의 연계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이 본질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원산지와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원산지 보호제와의 차이점이다. 즉, 지리적 표시 보호제의 경우는 특정한 품질이나 명성 또는 다른 특징과 지리적 원산지를 연결시킬 수 있으면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보다 유연한 편이다.

즉, 우선 해당 상품은 '구체적인 특질'을 지녀야 하는데 '구체적인 특질'을 농산물이나 농식품을 같은 범주에서 속하는 유사한 상품과 구분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특성을 위미한다. 맛이나 구체적인 원자재 등이 이에 속하나 ①포장 형태: 다른 상품과 차별되는 고급스럽거나 매력 있는 포장 ② 의무적인 규정이나 자발적인 기준만을 만족시키는 생산 방식 ③ 특정 지역이나 지리적 원산지 ④ 기술 혁신 적용의 결과 등 만으로는 인증대상이 되지 못한다.²⁹⁾ 다음은 전통 특산품 보증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원산지 보호제나 지리적 표시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지리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 특산품 보증제는 일반적인 상품고의 차별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둘째, 지리적 표시보호(PGI : Protected Geotected Indication)로서 이는 특정 지리적 역내에서 생산, 가공, 혹은 조제(합성) 중 적어도 한 단계는 이루어져야 한다. 상품과 해당지역 간의 연계가 반드시 요구되나 본질적 혹은 배타적일 필요는 없다. 특정 품질 혹은 명성만 있으면 연계가능하며 보호대상 품목 생산 중 최소 한 단계는 역내에서 발생될 것을 요구한다.³⁰⁾

셋째, 전통적 특성보증(TSG: Traditional Specialty Guaranteed)으로 이는 상품이 동종 농산물 혹은 식료품과 구별되는 분명한 특징을 지니되 상품의 특성이 반드시 전통적이거나 혹은 전통적 방법에 의해 생산 혹은 가공되어야 한다. 또 그 이름이 상품의 특성을 표현해야만 하며 지리적 요인이 생산자가 강조하고 싶은 전통적 속성보다 약할 때 보완 장치가 된다.³¹⁾ 1992년에 와인과 증류주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포함하는 EU차원의 규정을 채택한 이래 적법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³²⁾ 현재 대략 5000여개의 지리적 표시가 등록되어 있다. 와인과 증류주가 4200여건으로 84%이고 잔여의 730여건을 치즈, 육류제품, 음료, 미네랄 워터, 올리브유, 과일, 채소, 곡물 등 농산물과 맥주, 제과, 어류, 등 식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국의 지리적 표시 등록현황을 표 1과 같다.

29) 핀란드의 빵, 스페인의 햄, 벨기에 맥주 등이 특산품 보증 인증을 받았다.

30) EC Regulation No.2081/92

31) EC Regulation No.2082/92

32) 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지리적 · 원산지 표시 보호에 대한 이사회 규정이다.

<표1> 유럽연합 국가별·품목별 지리적 표시 인증 현황(2007.01 기준)

품목 분류	국가	벨기 예	체 코	덴 마크	독 일	그 리 스	스 페 인	프 랑 스	아 일 랜 드	이 탈 리 아	룩 셈 부 르 크	네 덜 란 드	오 스 트 리 아	포 르 투 갈	핀 란 드	스 웨 덴	영 국	소계
치즈	1		2	4	20	19	43	1	31		4	6	12		1	11	155	
육가공제품	2			8		10	4	1	28	1		2	28				84	
신선육류				3		13	50	1	2	1			26		7	103		
어패류				2	1		2								3	8		
계란, 꿀, 낙농업				1	2	6		2	1			10			1	23	46	
유지·올리브유	1			1	25	17	6		37	1		1	6				95	
신선올리브					10		4		2				1				17	
곡물·과일 채소류		1	2	22	28	24		45		2	3	21			1	150	300	
빵 및 제과류		1		4	1	7			3						1		17	
맥주			3		12										2		17	
기타음료					31			5							3		39	
비식품 및 기타					4	3	2		5						14		28	
소계	4	4	3	67	84	99	146	3	155	4	6	12	104	1	3	28	722	

자료 : 유럽연합집행위원회³³⁾

지역별로는 21.2%, 20.5% 스페인 14% 포르투갈 14%, 그리스 11%, 독일 9.2%, 영국 등 기타 10%이고 매출액으로는 이탈리아 190억 유로 이탈리아 120억 유로 스페인 35억 유로이다.³⁴⁾

지리적 표시는 EU의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과 고품질 농산물의 수출확대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농업보조금을 점차 축소하면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수출확대를 지원함으로써 EC 농산물의 고부가 가치화 내지 농산물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EU는 양자 협상을 통해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보장 받고 있다. 1994년 호주와의 와인 협정에서 유럽 명칭 호주 내 폐지를 2003년 캐나다와 와인 및 증류주 협정에서 유럽 표시의 캐나다 내 폐지를, 2006년 미국과의 와인 협정 체결로 16개 지리적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각 FTA 협정에서도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 있는데 EU·칠레 간 FTA로 와인 및 증류주 상호 보호 2001년 7월 EU·남아공 간 FTA로 Port Sherry 명칭 폐지 합

33) http://ec.europa.eu/agriculture/qual/en/1bbab_en.htm

34) http://b;og.naver.com/NBLogAMain.nhn?blogId=global_keb&keb&Redirect

의, 1997년 EU·멕시코 간 FTA에서의 종류주의 원산지 명칭 상호 인정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등으로 250개 유럽산 종류주 등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멕시코 내에서 보호토록 한 것 등이다.

2.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제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산물을 국내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1997년 농수산물 및 특징 관리법상에 지리적 표시 등록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1996년 10월 한·EU 기본 협력 협정 체결을 계기로 EU가 지리적 표시 보호 장치를 요구함에 따라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지리적 표시라 함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제에 대하여는 상품포장에 지리적 로고를 부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등록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지리적 표시등록현황(2007.05 기준)

등록년도	등록명칭	갯수
2002	보성녹차	1
2003	하동녹차	1
2004	고창복분자주	1
2005	서상마늘, 영양고춧가루, 의성마늘, 괴산고추, 순창전통고추장, 괴산고춧가루, 성외참외, 해남겨울배추, 이천쌀, 철원쌀	10
2006	고흥유자, 홍천찰옥수수, 강화약쑥, 회성한우고기, 제주돼지고기,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태백삼, 안동포, 충주사과, 밀양얼음골사과, 한산모시, 양양송이, 장흥표고버섯, 산청곶감, 정안밤, 울릉도삼나물, 울릉도미역취, 울릉도참고비, 울릉도부지개	20
2007	진도홍주, 정선황기, 경산대추, 봉화송이, 청양구기자, 무안백련차, 남해마늘, 단양마늘, 창녕양파, 부안양파, 예주쌀, 상조곶감	12
합계	45개 품목	

자료 : 농림부 품질관리원

우리나라는 이 같은 농수산물 품질관련법상으로 지리적 표시 보호를 규정하는 외에 별도로 상표법에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를 도입하여 그 명칭을 보호하고 있다. 이들

양자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나 양제도의 보호목적, 보호내용, 보호방법, 보호효과 등의 차이가 커서 그 실현 가능성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와 양립가능한 상호보완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WIPO/TRIPs 협상의 지리적 표시 보호에 충실한 제도를 도입하되 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 보다 강력한 법적 보호를 원하는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자 단체 등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향후 지리적 표시 보호관련 국제협상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상표법의 지리적 표시 단체장표장에 따른 지리적 표시 해당 요건을 보면 첫째, 지리적 표시의 보호대상은 상품이다. 상품의 종류에 제한이 없으므로 농산물·수산물·그 가공품뿐 아니라 공산품(특히 수공예품)도 포함되지만 서비스업은 보호대상이 아니다.³⁵⁾

둘째,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은 상품의 지리적 원산지란 점이다.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의 명칭을 말하며 반드시 행정구역상의 명칭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생산·제조 및 가공이 반드시 동일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에 따라 상품의 특성 등이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중의 하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생산·제조 및 가공이 동일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셋째,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존재해야 한다.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이 타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또는 가공된 상품과는 차별된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있어야 한다.

넷째, 상품의 특성 등과 지리적 환경 간에 본질적인 연관성이 존재한다. 상품의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등이 지리적 원산지와 본질적으로 연관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지리적 표시로 인정될 수 없으며, 상품의 특성 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독특한 기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 본질적으로 기초하여야 한다.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 등록제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의 양 제도를 비교해 보면 ① 목적(근거)의 경우 전자는 1999년부터 품질 보호를 위해(농수산물 품질 보호법), 후자는 2004년부터 명칭 보호를 위해(상표법) 도입되었고, ② 신청자격은 전자는 특정지역 안에서 지리적 표시대상품목을 생산 가공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업자로 구성된 법인이나, 후자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며, ③ 등록대상은 전자는 농산물 및 가공품이고 후자는 모든 상품이고 ④ 등록요건은 전자는 품목의 우수성, 명성과 지리적특성의 인과성, 대상지역 안에서 생산과 가공, 기타이나, 후자는 상품의 품질, 명성과 지리적 특성의 인과성, 대상 지역의 정의, 단체의 특성으로 규정되며, ⑤ 등록효과는 전자는 지리적 표시 배타적 사

35) 독일,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예외적으로 국제적으로 논란이 있으며, 이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국제조약은 아직 없음

용, 항구적 사용 가능하나 후자는 10년간 지리적 표시의 배타적 사용이 가능하며 ⑥ 침해 행위는 전자는 허위표시 금지, 지리적 특산물이 아닌 상품에 지리적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지리적 특산품에 지리적 특산품에 타 상품을 포함하여 판매나 그 목적의 보관, 진열을 하는 행위이며 후자는 유사상표 사용, 교부·판매, 유사상표양도·인도 위한 소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상이점이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지리적 표시 보호와 관련된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와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가 중첩되어 있다. 이는 행정비용의 이중 발생, 등록권자 간 권리의 충돌 및 갈등은 물론 한·EU FTA, DDA 등 국제협상에서 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양국의 지리적 표시 조화 방안

우리나라의 지리표시제를 EU의 경우와 비교하면 명성, 품질 등을 지리적 표시의 본질적 요소로 규정함으로써 EU규정에서와 같이 우리의 지리적표시제는 품질관리정책이고 WTO/TRIPs 협정에서는 모든 재화(goods)를 대상품목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제는 EU규정과 같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한정한다.

또한 EU규정에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지리적표시를 원산지명칭(PDO), 지리적 표시(PGI), 전통적 특성보증(TSG)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나 우리는 TRIPs 협정과 같이 지리적 표시로 단일화하고 있다.

한·EU FTA가 협상에 따른 조화 방안을 살펴보면, 와인 및 주류는 TRIPs 협정의 범주 내에서 보호가능 할 것이다. 한국은 물론 EU가 체결한 모든 양자 간 협정에는 TRIPs 협정 23조와 같은 수준에서 와인 및 종류주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 보호의 범위는 각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한 지리적 표시로 제한하고 이 같은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해 양측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조치와 상표나 지리적 표시 간 분쟁 가능성도 양자 간 협정에서 다루도록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농산품에 지리적 표시 보호가 요구될 경우이다. 그러나 지리적 표시는 우리나라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 가지 전략과 잘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EU는 FTA를 체결하면서 공히 지리적 표시 대상을 농산품 분야로 확대하고자 하므로 우리도 농산물의 국제화를 위해 지리적 표시제 확대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³⁶⁾

국내의 지리적 표시 등록만으로는 해외시장 진출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EU와 농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에 합의할 경우 국내 농산품도 현지의 등록절차 없

36) 한·칠레 FTA의 경우, 한국과 칠레는 상호 동수의 지리적 표시를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한국은 인삼, 김치, 보성녹차를 칠레는 'Pisco', 'Pajarete', 'Vino Asoleado' 등 3개 와인과 종류주를 대상 품목으로 제시하였다.

이 배타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 경우 국내의 어떤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여 지리적 표시 대상품목을 선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EU의 농산물이나 식품 등의 수출 시장 개척에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³⁷⁾.

특히 지리적 표시를 등록한 40여개 품목은 수출유망 상품으로 품질과 명성을 홍보하는데 지리적 표시제를 적극 활용하면서 유럽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농산물과 수출상품을 계속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지리적 표시제도는 상품의 품질이나 맛이 생산지의 기후나 풍토 등 지리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높은 명성을 지닌 지리적 명칭을 등록해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등의 특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본질적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표 원산지표시 품질인증 등과 구별된다.

지리적 표시는 19C 후반부터 국제적인 보호노력이 전개되었는데 그간에는 파리조약 마드리드 협약 리스본 협약에 위임되어 있다가 WTO 출범을 계기로 TRIPs 협정에 지리적 표시가 지적 재산권의 보호 대상의 하나로 편입이 되면서 양자적, 복수적, 임의적 규범이 아니라 다자적 의무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 후로도 국제적 보호 확대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으나 회원국의 이해 대립으로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은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에 기인하는 경우 상품의 회원국의 영토 또는 지역이나 지방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로 규정하고 특정한 지리적 명칭의 사용 금지 요청권, 상표의 무효거절, 포도주와 주류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국가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각국 지리적 표시의 보호 형태는 다양하나 EU가 가장 발전된 형태이다. EU의 경우 지리적 표시제는 생산제도 및 처리 공정 모두가 해당지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원산지 명칭 보호와 그 중 하나 이상 지역과 연계성이 있으면 해당되는 지리적 표시보호 등이 있다.

현재 EU에는 약 5,000여건의 지리적 표시가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남부유럽의 공업 국가의 지리적 표시가 압도적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7월부터 농수산 품질관리법에 지리적 표시보호를 위한 등록제를 마련했고 2004년 7월에는 상표법상에 지리적 표시등록 단체장 제도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지리적 표시의 보호법제화는 각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 압력 및 WTO의 지적 재산권 협정상의 지리적 표시 보호를 적극 수용 대처하면서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

37) 국산 쌀의 스위스 수출은 EU 시장의 진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을 보호하고 나아가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 산업으로의 육성에 따른 경쟁력 강화,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데 그 제도의 목적이 있다. 이에 근거하여 현재 보성녹차 등 45개의 품목이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어 있다. EU와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라 EU가 지리적 표시에 관한 한 그 보호가 가장 발전되어 있고 보호 등록이 많은데다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과 고품질 농산물의 수출확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의 주요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EU는 와인 및 주류뿐만 아니라 일반 농산물이나 가공품 등에 대한 지리적 표시보호체계를 앞세워 상호인정을 3차 협상부터 본격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정된다. 여기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기는 하나 한 EU FTA 협정을 계기로 농산물 등의 EU 시장에의 과감한 진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어 있는 45개 품목을 대 EU 수출상품으로 명성을 확보하여 수출증대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지리적 표시제야말로 우리나라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고부가가치 전략의 구축에 있어 근간이자 결정적인 동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므로 지리적 표시보호품목의 지속적 확대에 결들어 우리 농산물과 식품의 개발 및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유럽 시장을 자연스레 개척하는 결정적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문선 외, 거대 경제 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정책과제, 2004
2. 김병일,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 연구」, 인하대 2002
3. 김수석, 지리적 표시의 법제화 연구, 「지식 재산21」, 특허청 2000
4. 김용진, 우리나라 관세자유지역의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 2003
5. 김정수, GATS 진급세이프가드 규범 제정협상의 쟁점사항, 한국항만경제학회 21-2, 2005
6. 김한호, '한·EU FTA의 예상점검-지리적 표시제' GS&J 인스티튜트, 2007
7. 김종갑, EU의 지리적 표시 보호 요구와 대응, 「SERI 경제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2007
8. 김태곤, EU 지리적 표시제 논의 동향, 「세계농업뉴스 44호」, 2004
9. 김홍종 외,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10. 서정옥, 지리적 표시제 도입이 지역문화 산업 전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지리학회, 2006
11. 박노경, 박길영, 부산자유무역지역 입지선정 검증, 한국항만경제학회, 21-3, 2005
12. 송유철, 농업 협상 제 2단계 각국 제안서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13. 이명근, 한·EU FTA 협상과 농업부문의 쟁점, 한국농촌경제 5월호, 2007
14. 유찬희, EU 농산물 품질정책과 지리적 표시제 개요, 농촌경제연구원, 2007
15. 이재우, WTO 농업협상의 전개와 성과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16. 임종수, DDA 농업 모델리티 협상안의 평가와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17. 특허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2005
18. Brown, Ralph S. 1994. "New Wine in old Bottles: The Protection of France's Wine Classification System Beyond Its Border." Bosto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Journal 12.
19. Carlos M. Correa. 1999. "Access to Plant Genetic Resources and Intellectual Property

- Rights." FAO Background Study Paper No.8 Commission on Genetic Resources f o r Food and Agriculture.
- 20. Conley, John M., & Peters on David W., The Role of Experts in Software Infringement Case, 22 G.A.L Rev(1988).
 - 21. Christe, Andrew & Gare, Stephen, Blackstone's Statutes on Intellectual Property, Blackstone Press Limited, 1992.
 - 22. Downes, David R 1997. "Using Ontellectual Property as a Tool to Protect Traditional Knowledge" CIEL discussion paper.
 - 23. Dwijen Rangnalar, Geographical Indications : A Review of Prposals a the TRIPS Council, UNCTAD/ICTSD Capacity Building Project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June 2002), p.16.
 - 24. Halewood, Michael. 1999. "Indigenous and Local Knowledge in International Law: A Preface to Sui Generis Intellcetual Propert Protection." McGill Law Jourcal 44.
 - 25.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gerence=IP/07/1008&format=HT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 26. Http://ec.europa.eu/agriculture/capreform/wine/index_en.htm, Summary on wine reform
 - 27. Http://ec.europa.eu/agriculture/capreform/wine/index_en.htm, Factsheet: "towards asustainable European wine sector"
 - 28. Http://ec.europa.eu/agriculture/foodquali1_en.htm"Fact Sheet:"European policy for quality agricultural products"

< 요 약 >

지리적 표시의 의의 및 보호체계 연구

고 용 부

본 연구에서는 한 EU FTA 협상에서 중요이슈가 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으로서의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의의 및 보호체계를 검토 연구했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등이 지리적 특성과 연계된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19C 후반부터 이에 대한 보호노력이 여러형태로 계속되어 오다가 드디어 WTO TRIPS 협정 상에 지적 재산권 보호대상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리적 표시는 양자 규범 복수규범 내지 임의 규범에서 다자 규범 의무 규범으로 발전 된 것이다. 지리적 표시는 이같이 다자규범으로 자리 잡은 후에도 특히 EU를 주도로 하여 DDA 협상에서 계속 확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리적표시보호에 대한 각국의 체계 및 형태는 유사하나 크게는 EU형과 미국형이 있다. 특히 EU는 지리적 표시가 품질정책 및 공동농업정책의 근간이 되어있고 현재 남부 공업국가의 품목들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5,000여개의 지리적 표시가 주류 및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규범체계의 정립 및 확대에서 항상 주도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7월부터 농수산 품질관리법에 의한 등록제를 마련했고 2004 7월에는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단체장 등록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40여 개의 품목들이 지리적 표시품목으로 등록되어있다.

한국과 EU 간의 지리적 표시에 관련한 협상에서는 EU 측의 적극적 상호인정 요구가 추진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응이나 전략여하가 문제된다. 물론 EU는 그 보호가 발전되어 있고 보호등록이 많으며 그것이 농업정책의 개혁과 고품질 농산물의 확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상호인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장기적구도로 본다면 지리적 표시 보호의 상호 인정을 회피나 무조건적 거부보다는 긍정적 단계적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국제적 규범과 조화하면서도 후속적 관리와 대응에 철저한 이른바 전략적 수용과 대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지리적표시제는 우리 농산물만의 특성에 따른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고 부가치 전략 구축에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농업인의 지혜를 모아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40여개 품목에 대한 지속적 품질 개선은 물론 타 농산물 및 식품의 지속적 표시확대 그리고 특성화에로의 개발전략 등으로 EU시장에 과감히 진출할 경우 유럽시장에의 우리의 접근성 창출성이 크게 증폭 될 것이다.

- 주제어: 지리적 표시, 지적재산권, 한-EU 자유무역협정, WTO지적재산권협정, 유럽연합규정